

-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

5. 면허효력 소멸시의 기납세에 대한 조치 (법 제167조)

-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함. 이 경우 과오납금 환부이자는 가산하지 않음
- 면허의 유효기간 종료, 면허의 취소,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함

6. 면허시의 납세확인 (법 제168조, 영 제127조)

-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당해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
- 면허의 부여기관은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·납입금액·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
- 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·면허명칭·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·군에 보내야 함

7. 면허에 관한 통보 및 관계서류 열람 (영 제129조, 제130조)

-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·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